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02
----------	-----

2014년 12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4년 11월 14일, 김영한의원
-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11월 24일
- 다. 상 정 일 자 :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4년 12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영한의원)

- 우리는 쉽고 좋은 한글을 가지고도 한자어로 표현된 경직된 문장이나, 용어와 표현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임.
- 따라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경과”을 “지난”으로 하고, “준치”를 “보존”

으로 하며, “이차보전”을 “이자 차액의 보전”으로 하는 내용임.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호)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¹⁾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²⁾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 어려운 한자어 등을 한글 맞춤법 등의 어문규범에 맞게 수정하여 일반 시민이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음.
- 동 조례 제3조의2중 “경과된”을 “지난”으로 하고 “존치”를 “보존”으로 하며, 제8조제2항제1호중 “이차보전”을 “이자 차액의 보전”으로 수정하는 등 대부분 자구수정을 하고 있는 바,
 - 이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례상 자구수정이므로 관계법령과 상치되는 점이 없고, 별도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음.

1)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향후 서울시에서는 관련 조례의 제·개정에서, 시민이 조례의 용어와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고, 문법에도 맞지 않아, 일상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한자어 등으로 표현된 경직된 법령 문장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루 빨리 진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경과된”을 “지난”으로 하고 “존치”를 “보존”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이차보전”을 “이자 차액의 보전”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2회”을 “두 차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u>경과된</u> 이후에도 기금의 <u>존치</u>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8조(자활계정)</p> <p>① (생략)</p> <p>② 자활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u>이자보전</u></p> <p>제10조(기금운용계획 등)</p> <p>①~② (생략)</p> <p>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 <u>의결을 얻어야</u> 한다.</p> <p>제18조(계정별 위원회의 운영)</p> <p>① (생략)</p> <p>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 및</p>	<p>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 ----- <u>지</u> <u>난</u> ----- <u>보존</u> ----- ----- ----- -----.</p> <p>제8조(자활계정)</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 ----- ----- <u>이자 차액의 보전</u></p> <p>제10조(기금운용계획 등)</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u>받아야</u> ----.</p> <p>제18조(계정별 위원회의 운영)</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p>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
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
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두 차례 -----

-----.